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CCTV카메라의 경우 비디오 카메라에 속하지만 어떤 규격인 경우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게 되는지요? 또한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모델 규격이 동일한 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이미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제3의 수입자가 바로 이 동일사 동일제품 동일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자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A CCTV 카메라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중 "비디오 카메라"에 해당되나, 교류 220V전원을 사용하는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제조자가 받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몇몇이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산자부장관이 정한 해외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 국내에서 어느정도 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요?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자부 장관이 정한 해외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물품」은 외국과의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등에 의한 외국인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뜻하나,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실적이 없으며, 싱가포르의 PSB와는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조명기기 중 전자식안정기의 기본모델이 정격전압, 정격입력, 램프의 수, 방수보호등급, 사용장소, 램프의 종류가 동일하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콘덴서,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이 일부가 변경되면 이 제품은 새로운 모델 입니까? 아니면 파생모델 입니까?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 받은 전자식안정기가 정격전압, 정격입력, 램프의 수, 방수보호등급, 사용장소, 램프의 종류가 동일하나,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덴서 등이 변경되면 새로운 기본 모델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안전인증제품에 변경 사용될 부품 또는 재질이 제조사가 같거나 또는 다른 경우 전기적인 특성 및 절연등급이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일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별표1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요령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동 운용요령 별표5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